

밀산업육성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밀산업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밀을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재배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2. 밀을 제분·가공·제조 또는 조리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3. 가공·제조 또는 조리된 밀가공품을 포장·보관·수송 또는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
4. 그 밖에 밀산업 발전과 밀 또는 밀가공품의 이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 관계 시행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밀가공품 개발 및 새로운 용도 개발에 관한 사항

2. 밀 품종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밀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밀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3.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기간 내에서 사업의 시행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경우 농

립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산 밀 신수요 창출 및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밀 가공품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밀 생산·유통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재배면적, 생산농가수, 지정을 요청하는 단지의 지적도 등 현황 자료
2. 밀 생산·유통단지 지정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지역
2. 배수로 개선, 농기계 보급 등 생산기반 조성이 되어 있거나 추진 중인 지역
3. 밀 건조·저장·가공시설 지원 등 유통기반 조성이 되어 있거나 추진 중인 지역
4. 법 제11조에 따른 계약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 생산·유통 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밀 생산·유통단지가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밀 생산·유통 단지의 축소 또는 지정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등과 협의를 거쳐 밀 생산·유통단지의 축소 또는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다.

제8조(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품종·품질별 저장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2. 특수목적용 소규모 제분 및 혼합을 위한 설비 설치 및 개보수

3. 품질 특성 분석을 위한 분석기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밀 및 밀 가공품의 생산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단체의 설립) ① 법 제15조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법 제2조에 따른 밀산업 종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우선구매)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시설”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급식시설로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에 관한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운영 및 취소에 관한 업무를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장에게 위탁한다.

부 칙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시설 및 장비

가. 사무실

나. 강의실 및 실습실: 수용인원이 20명 이상 가능한 장소가 1개 이상일 것

다. 화장실: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일 것

라. 급수시설: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

마. 조명시설: 야간 강의 시 책상 면과 칠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바. 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 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사. 교육장비: 컴퓨터, 품질분석기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을 보유할 것

2. 교육과정: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할 것

가. 밀 재배·생산 관련 교육과정

나. 밀 수확 후 관리 관련 교육과정

다. 밀 제분기술 관련 교육과정

라. 밀 또는 밀가루의 가공적성 및 활용 관련 교육과정

마. 그 밖에 밀과 관련된 기술 등의 보급·전수에 필요한 교육과정

3. 교육시간: 교육시간(실습을 포함한다)은 최소 2시간 이상이 되도록 구성할 것

4. 강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일 것

가.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교육과목에 대한 학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법인으로 등록된 기관 또는 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1년 이상 교육 관련 업무나 강의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별표 2]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제5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 조문	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조 제4항제4호	경고	지정취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식량산업과	
연 락 처	(044) 201-1836